##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



[시행 2025. 5. 7.] [대통령령 제35501호, 2025. 5. 7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건설산업과 - 건설기계 등록관리, 수급조절) 044-201-4980, 3537 국토교통부 (건설산업과 - 건설기계 검사, 제작·조립·수입) 044-201-3544, 4366 국토교통부 (건설산업과 - 건설기계 사업자, 협·단체 및 전산시스템 관리) 044-201-4588, 3537 국토교통부 (건설산업과 -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, 교육 및 타워크레인) 044-201-3542, 3543

제1조(목적) 이 영은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7. 18.>

**제2조(건설기계의 범위)** 「건설기계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군수품관리법」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1999. 9. 9., 2007. 7. 18., 2025. 5. 7.>

- 제3조(등록의 신청 등)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(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・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(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고,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 3. 12, 2000. 6. 27, 2004. 3. 17, 2006. 6. 12, 2007. 7. 18, 2010. 5. 4, 2010. 5. 27, 2010. 11. 2, 2013. 2. 20, 2016. 6. 30, 2018. 8. 14.>
  - 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원본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)로 대체할 수 있다.
    - 가,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: 건설기계제작증
    - 나. 수입한 건설기계: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- 다.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: 매수증서
  - 2.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3. 건설기계제원표
  - 4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령」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,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)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(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)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(법 제19조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)를 확인하고,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9. 9., 2007. 7. 18.>
  - ④시・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법 제 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(이하 "전산정보처리조직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07, 7, 18, 2008, 2,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9., 2013. 2. 20., 2013. 3. 23.>
- ⑤시·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07. 7. 18., 2013. 2. 20.>
- 제3조의2(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(이하 "건설기계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. <개정 2008. 2, 29,, 2013, 3, 23.>
  -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
  - 2. 건설기계의 임대단가,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
  - 3. 건설기계의 기종별 용량별 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
  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 [본조신설 2007. 7. 18.]
- 제3조의3(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)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"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3. 2. 20.>
  - ②시·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(말소되는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인 건설기계에 한정한다)의 등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0. 5. 27,, 2018. 1. 16.>
  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07. 7. 18.]

- 제3조의4(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)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(이하 "수급조절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  - 1.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- 3.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
  - 4.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
  -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<개정 2008. 2. 29, 2013. 2. 20, 2013. 3. 23.>
  - 1. 국토교통부,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  - 2. 특별시・광역시・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라 한다)의 3급 이상 공무원
  - 3.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
  - 4.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
  -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7. 7. 18.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조의5(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)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,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-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  -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7. 7. 18.]

- **제3조의6(위원의 해촉 등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[본조신설 2015, 12, 31,]

제4조 삭제 <2000. 6. 27.>

- 제5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)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전시·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. <개정 1999.
  - 3. 12., 1999. 9. 9., 2007. 7. 18., 2018. 1. 16., 2019. 3. 19., 2024. 11. 5.>
  - 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  - 2. 건설기계등록증
  - 3. 건설기계검사증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·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. 6., 2018. 1. 16., 2024. 11. 5.>
  - 1. 「주민등록법」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
  - 2. 「주민등록법」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
  - 3. 「출입국관리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
  - 4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
  - ③제1항에 따른 신고(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·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,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(이하 "검사대행자"라한다)에게 통지해야 한다.<개정 2000. 6. 27., 2015. 1. 6., 2018. 1. 16., 2020. 6. 23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5조의2(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)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5. 7.>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99. 9. 9.]

**제6조** 삭제 <2024. 11. 5.>

제7조 삭제 <1999. 3. 12.>

제8조(등록의 경정) 시·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,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6.>

[제목개정 2018. 1. 16.]

- 제9조(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·관리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. <개정 2007. 7. 18.>
  - ②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·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·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 7. 18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・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・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07. 12. 31., 2013. 2. 20.>
- **제9조의2(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**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2. 8. 2.> [본조신설 2016. 7. 19.]
- 제10조(등록번호표의 반납) 법 제9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"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4. 11. 5.]

- 제10조의2(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길이 너비 및 높이
  - 2. 최저지상고
  - 3. 총중량
  - 4. 중량분포
  - 5. 최대안전경사각도
  - 6. 최소회전반경
  - 7.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
  -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 3. 23.>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원동기(동력발생장치) 및 동력전달장치
- 2. 주행장치
- 3. 조종장치
- 4. 조향장치
- 5. 제동장치
- 6. 완충장치
- 7. 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, 그 밖의 전기 전자장치
- 8. 차체 및 차대
- 9.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
- 10.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
- 11. 창유리
- 12. 소음방지장치
- 13. 배기가스발산장치
- 14. 전조등 · 번호등 · 후미등 · 제동등 · 차폭등 · 후퇴등, 그 밖의 등화장치
- 15. 경음기 및 경보장치
- 16. 방향지시등, 그 밖의 지시장치
- 17. 후사경・창닦이기, 그 밖의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
- 18. 속도계·주행거리계·운행기록계, 그 밖의 계기
- 19. 소화기 및 방화장치
- 20.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
- 21.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사용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

[본조신설 2009. 6. 25.]

**제10조의3(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**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2. 8. 2.]

[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<2022. 8. 2.>]

제10조의4(검사업무 등)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"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19.]

[제10조의3에서 이동 <2022. 8. 2.>]

- **제11조(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)**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"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. <개정 2007. 7. 18., 2007. 11. 5., 2010. 5. 27., 2015. 1. 6., 2019. 3. 19.>
  - 1. 불도저
  - 2. 굴착기(무한궤도식에 한한다)
  - 3. 로더(무한궤도식에 한한다)
  - 4. 지게차
  - 5. 스크레이퍼
  - 6. 기중기(무한궤도식에 한한다)
  - 7. 롤러
  - 8. 노상안정기
  - 9. 콘크리트뱃칭플랜트

- 10. 콘크리트피니셔
- 11. 콘크리트살포기
- 12. 아스팔트믹싱플랜트
- 13. 아스팔트피니셔
- 14. 골재살포기
- 15. 쇄석기
- 16. 공기압축기
- 17. 천공기(무한궤도식에 한한다)
- 18. 항타 및 항발기
- 19. 자갈채취기
- 20. 준설선
- 21. 특수건설기계
- 22. 삭제 < 2020. 6. 23.>

[전문개정 1999. 9. 9.]

- 제12조(건설기계의 확인검사)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. <개정 1999. 9. 9., 2007. 7. 18.>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1994. 12. 23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.<개정 1999. 9. 9.,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6. 23.>
  -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 9. 9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2조의2(제작결함의 조사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(이하 "제작등"이라 한다)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한국교통안전공단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6. 23.>
  - 1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  - 2. 안전운행 및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
  - 3. 건설기계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작등이 되고 있는지 여부
 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[본조신설 2013. 2. 20.]
- **제12조의3(건설기계의 내구연한)**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"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.
  - 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(耐久年限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. 다만,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(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  - 1.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: 최초의 신규등록일
  - 2.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: 제작연도의 말일 [본조신설 2019. 9. 17.]

## [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<2019. 9. 17.>]

- 제12조의4(건설기계부품 인증 등)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"이란 다음 각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. <개정 2020. 6. 23.>
  - 1. 타워크레인의 유압(油壓) 실린더(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2. 타워크레인의 브레이크라이닝
  - 3. 타워크레인의 마스트(mast: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)
  - 4. 타워크레인의 지브(jib: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)

[본조신설 2019. 3. 19.]

[제12조의3에서 이동 <2019. 9. 17.>]

- 제12조의5(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)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(이하 "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8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,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 - 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⑥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조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 ·의 결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⑦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- ⑧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- 제12조의6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 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・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(不作爲)에 관여한 경우
  - 6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
  - 7.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(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를 포함한다)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
  - 8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·단체 등과 관련된 자문,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최근 2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④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해당 안건의심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제12조의7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의6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"은 "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원"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- 제12조의8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) 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당사자, 이해관계자 또는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(이하 이 조에서 "공익신고자등"이라 한다)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
  - 2.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3.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호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당사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, 이해관계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은 심의결과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당초의 심의·의결 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제12조의9(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5항에 따라 제12조의5제8항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

[본조신설 2020. 10. 8.]

- 제13조(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)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(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 12. 23, 1999. 9. 9, 2007. 7. 18, 2008. 2. 29, 2013. 2. 20, 2013. 3. 23.>
  -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.<개정 1999. 3. 12,, 2007. 7. 18.>
  - 1. 일반건설기계대여업 :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(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 - 2. 개별건설기계대여업 :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
  -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 7. 18.>
  -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·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,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1994. 12. 23., 2007. 7. 18., 2008. 2. 29., 2013. 3. 23.>
- 제14조(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)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 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 12. 23,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1999. 9. 9., 2007. 7. 18., 2008. 2. 29., 2013. 2. 20., 2013. 3. 23.>

-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,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<개정 2007. 7. 18.>
- 1. 종합건설기계정비업
- 2. 부분건설기계정비업
- 3. 전문건설기계정비업
- **제15조(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)**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 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 12. 23., 1999. 9. 9., 2007. 7. 18., 2008. 2. 29., 2013. 2. 20., 2013. 3. 23.>
- 제15조의2(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)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 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 7. 18., 2008. 2. 29., 2013. 2. 20., 2013. 3. 23., 2018. 1. 16.>

[본조신설 1999. 9. 9.]

[제목개정 2018. 1. 16.]

- **제16조(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)** 법 제2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0. 5. 27., 2014. 7. 28.>
  - 1.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
  - 2.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
  - 3.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·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
  - 4.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
  - 5.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
  - 6.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07. 7. 18.]

- 제16조의2(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) ① 법 제22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 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 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6. 7. 19.]

[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<2016. 7. 19.>]

- 제16조의3(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·이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<개정 2016. 7. 19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,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16. 7. 19., 2022. 8. 2.>
- 1. 실태조사한 현장 수 및 계약 건수
- 2.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비율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비율
- 3.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(제5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한다)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7. 19.>

[본조신설 2014. 7. 28.]

[제16조의2에서 이동 <2016. 7. 19.>]

- 제16조의4(수시적성검사)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"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  - ②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(이하 "수시적성검사"라 한다)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(이하 "수시적성검사대상자"라 한다)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19.]

- 제16조의5(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)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6조의 4제3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
  - 2.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
  - 3.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
  - 4.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
  - 5. 군 복무 중(「병역법」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, 사병으로 한정한다)인 경우
  - 6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  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.

[본조신설 2019. 3. 19.]

- 제17조(공제사업의 허가)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 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공제사업의 내용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공제계약
- 3. 분담금 · 공제금 · 책임준비금 · 비상위험준비금 · 지급준비금 · 결손금 등의 처리방법
- 4.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1999. 9. 9.]

제17조의2(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)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
- 2.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·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
- 3.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 해에 대한 공제
- 4.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5.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
-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·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.
-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99. 9. 9.]

- 제17조의3(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(이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(이하 이 조에서 "건설기계협회"라 한다)가 설치 · 운영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
  - 2.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
  - 3.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
  - 4.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  -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 7. 28.]

[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<2014. 7. 28.>]

- 제17조의4(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) ①시·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(이하 "방치된 건설기계"라 한다)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, 발견장소, 방치기간,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  - ②시·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  - 1.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
  - 2. 구조・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・파손되어 정비・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
  - 3.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
  - ③시·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시·도지사는 다른 시·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·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1999. 9. 9.] [제17조의3에서 이동 <2014. 7. 28.>]

제17조의5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과 수납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(과징금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<개정 2023. 12. 12.>
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, 시・도지사,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8. 2.]

- **제18조(전산자료의 이용)**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및 근거
  - 2. 전산자료의 범위
  - 3. 전산자료의 제공방식,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 대책 등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타당성, 전산자료 이용 내용의 적합성 및 공익성
  - 2. 사생활 침해 여부
  - 3.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
  -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전산자료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내용을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1. 제2항 각 호의 사항
  - 2.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
  - 3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지 여부

[본조신설 2013. 2. 20.]

제18조의2(권한의 위임)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(이하 "전산자료"라 한다)의 이용(둘 이상의 시·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) 승인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3. 2. 20.]

[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<2013. 2. 20.>]

- **제18조의3(업무의 위탁)**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9. 9. 17., 2020. 6. 23.>
  - 1. 한국교통안전공단
  - 2. 타워크레인의 제작·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자(이하 "타워크레인제작자"라 한다)
  -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.<개정 2007. 11. 5., 2008. 2. 29., 2009. 1. 14., 2010. 5. 27., 2013. 3. 23., 2014. 7. 28., 2019. 2. 8., 2019. 3. 19.,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2019. 9. 17., 2020. 6. 23.>

- 1.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,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,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: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 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. 다만,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한다.
- 1의2.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: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(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)
- 2.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 업무: 한국교통안전공단
- 3.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· 운영 업무: 한국교통안전공단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위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신설 2018. 1. 16.>

[전문개정 2007. 7. 18.]

[제목개정 2014. 7. 28.]

[제18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<2013. 2. 20.>]

- 제18조의4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건설기계 검사대행자, 건설기계사업자,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 및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8.>
  - 1.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・재발급에 관한 사무
  - 2.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  - 3.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
  - 4.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·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·발급에 관한 사무
  - 5.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, 지정 사항 변경,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
  - 6.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
  - 7.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,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
  - 8.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
  - 9.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
  - 10.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,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
  - 11.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
  - 12. 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
  - 13.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
  - 14. 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
  - 15.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,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
  - 16.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ㆍ 정지에 관한 사무
  - 16의2.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
  - 17.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
  - 17의2.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등에 관한 사무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8. 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
- 19.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
- ②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 3. 27.]

제18조의5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8. 2.]

- **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①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0. 5. 27, 2022. 8. 2.>
  - ②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신설 2022. 8. 2.>
  - 1. 법 제44조제1항제1호・제1호의2,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・제 7호・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: 시・도지사
  - 2.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・제1호의4, 같은 조 제2항제7호・제8호, 같은 조 제3항제9호・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: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
  - 3.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: 국토교통부장관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
  - 4. 법 제44조제1항제4호,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: 국토교통부장관
  - 5. 법 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과태료: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  - 6.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: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

[전문개정 2009. 6. 25.]

부칙 <제35501호,2025. 5. 7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기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제작등을 한 지게차에 대해서는 별표 1 제4호의 범위란 단 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